

제15조 (경비부담)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.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.

제16조 (회계) 협의회는 경리상황은 매 회의때마다 보고하여 협의회 승인을 받는다.

제17조 (규약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8조 (보칙)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약폐지)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규약 ('88.11.15개정)은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약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【 10 】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철회의건

제의년월일 : 1993. 5. 11.

제 의 자 : 의 장

주 문

양주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는 이를 동의한다.

제안이유

- 양주군수가 제출하여 제16회의회 (임시회)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보류되어 계류중인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

-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철회 요구서가 93년 5월 11일 양주군수로부터 제출되었기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주문과 같이 이의 철회를 허가하려는 것임

【 11 】 19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

제출년월일 : 1993. 5. 11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1항
-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거 '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

주요골자

구 분	당 초	변 경	증 감
취 득	.토지 : 5필지 16,951㎡ .건물 : 4동 485.8㎡	.토지 : 20필지 43,906㎡ .건물 : 4동 485.8㎡	.토지 : 15필지 26,955㎡
처 분	.토지 : 1필지 14,310㎡		
무상대부			

19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

양주군수가 제출하여 제14회의회 (정기회) 제3차 본회의 (92. 12. 10)에서 의결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.

1. 취득대상 재산